

##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」 개정 안내

1. 규정명 :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」

2. 제정(변경)의 필요성 : 업무 수행 주체를 실제 업무 수행자로 명시

3. 주요 제정(변경)내용 :

항 목	내 용
제34조 이 규정 등의 신설·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등	업무 수행 주체를 실제 업무 수행자로 명시

4.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: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권익 보호

5. 시행일자 : 2023년 2월 9일 (2023년 2월 8일 이사회 승인)

6. 적용 대상(범위) :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,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
회사의 내규는 이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하며, 이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(첨부)

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」 개정대비표

개정전	개정후
<p>제34조(이 규정 등의 신설·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등)</p> <p>③ 회사는 이 규정등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·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,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,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의 제정·개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<u>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4조(이 규정등의 신설·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등)</p> <p>③ 회사는 이 규정등의 내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·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,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,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의 제정·개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<u>직무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